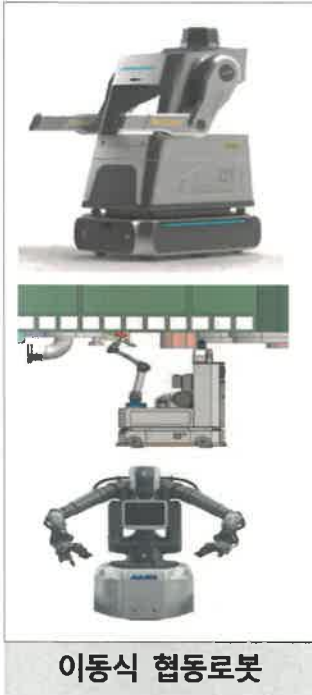


## 붙임4

## 분야별 우수사례 예시

### ① (지역산업)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sup>㉔</sup> 마련으로 제작, 생산 공정 효율 증대<sup>(대구 본청)</sup>



- **기존**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23조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 시 공간 분리와 안전펜스 등이 필수였고, 이로 인해 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불가
- **과정** 실증특례 승인(2020.12~2022.11), 임시허가 획득('22.12.), 안전가이드(고용부), 단체표준(KOROS)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KS 산업표준(KSB7327)\*** 제정('24.11.) 완료  
\*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범위, 인용표준, 안전 요구사항 등
- **개선** 이를 근거로 안전검사, 인증 세척을 마련하여 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제223조) 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실제 현장 활용이 가능해짐
- **효과** 상용화 모델 7종 개발, 신기술 관련 특허출원(54개), 특허 등록(8개), 디자인등록(2개), 매출 467억원 창출('24년), 생산성 평균 9.3% 향상, 14개 특구사업자 기업에서 294명 채용

### ② (지역산업) 농어촌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sup>(전남 함평군)</sup>

▶ 제84조제4항5호 개정  
<단서조항 신설>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이하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7.1.)>

- **기존**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내 기업이 설비투자나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 제한(70%)**으로 인해 해당 농공단지 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고, **농공단지 외 토지를 매입해야 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문제**  
\* 남품 물량 증가로 추가 설비투자나 공장증설 필연적  
\* 타 산업단지(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건폐율(80%)
- **과정**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발굴('23.2.) 후 전남도, 행안부, 중소기업 읍부즈만에 규제 개선 지속 건의('23.3.~'24.5., '불수용'), 규제애로 호소기업 현장 방문 실시('24.5., '24.10.), 농공단지협의회와 간담회 개최('24.8.),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상정('24.8., '재심의/'24.10., '재검토')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 제5호 단서 조항을 신설해 기존 농공단지 건폐율 70% → 80%까지 상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7.1.)
- **효과** 전국적으로 신규 농공단지 건설없이 유효부지 확보효과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485개 농공단지 7,886개 기업의 추가 투자 가능 여건 조성

③ (민생)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공백 해결 (전북 장수군)

▶보건의료이용률 2배이상 증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3호

3.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 면 또는 도서지역

- **기존** 산서면은 보건지소와 약국이 각 1개소가 있는 의약분업 지역이나 약국 운영자의 고령(88세)에 따른 건강질환 등으로 정상적 약국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인근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약을 받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약 9km 왕복2시간, 버스 배차 8회)
- **과정** ①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요구('24.7.)→'불가', ②장수군 관련 부서에 행복콜택시 운영으로 산서 오수 간 약국 이용 제한('24.7.)→'불가', ③장수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24.7.), ④행안부 중앙규제 개선과제별 건의로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요구('25.1.), 행안부 제21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보건복지부 대안제시(사례 배포)·수용('25.3.)
- **개선** 산서면보건지소 내 진료와 더불어 약 구입 가능, 약국은 처방전 없이 3일 분량의 전문의약품 판매 가능
- **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 불편 해소

④ (자치법규)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인의 소득 상승 (전북 부안군)

부안군 벌교(여자면)

<일반적 새꼬막 채취>

양식장형망선

<부안군 새꼬막 채취>

▶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개정 ('25.4.)

"양식장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삭제

- **기존**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양식장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 해서는 안되며," 라는 규정으로 어선(양식장형망선)을 이용한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상시조업) 불가
  - 형망선 관련 상위법이 수산업법에서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조례 내 기존의 제한 규정 존치
  - \* 수산업법 + 내수면어업법 ⇒ 양식산업발전법('20.8.) 제정
  - \* (어업+양식업) 부안군 형망선 조례('07.3. 제정) 폐지('24.4.) ⇒ (양식업) 부안군 관리선 조례 제정('24.4.)
- **과정** 불법어업 증가원인분석 및 야간조업 허용에 관한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제출('24.1. ~ '24.11.), 부안군 관리선 조례 개정 추진('25.1. ~ '25.4.)
- **개선**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5.4. 야간조업 제한 문구 삭제)
- **효과** 어선(양식장형망선)을 이용한 새꼬막 채취 상시(24시) 조업 가능으로 새꼬막 생산량 및 어업인의 소득 상승(어업인당 평균 약 4천만원 이상 소득증가 / 2025년 기준 총 80억 규모 상승)